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㈜은성라이프 보험대리점

2. 제재조치일(검사서 통보일) : 2026. 6. 18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 원 등	(보험설계사) 업무정지 180일(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)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(1)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

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금을 취득할 자,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,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,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,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,

㈜은성라이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4.7.28.~2014.12.22. 기간 중 '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'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입·퇴원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.8.11.~2014.12.24. 기간 중 A보험회사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37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 「보험업법」 제102조의2
2. 「보험업법」 제102조의3